

5 알아두어야 할 사항

주택 공급에서 출신 국가 차별

- 1 뉴저지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국적 차별 및 괴롭힘은 불법입니다.** 뉴저지 차별 금지법(LAD)은 난민, 이민자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주택 공급에서의 국적 차별 및 국적에 따른 괴롭힘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. 이러한 차별에는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, 출생 국가, 문화 또는 언어에 근거한 불공정한 대우가 포함됩니다.
- 2 주택 공급자는 국적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** 주택 공급자는, 그 직원 또는 동료 세입자는 실제 또는 인지되는 국적을 이유로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. 주택 공급자는 괴롭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괴롭힘을 막아야 합니다. 괴롭힘에는 모욕적인 제스처, 인종 비하, 경멸적인 농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3 LAD법에 따라 주택 공급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.** 임대인, 건물 관리자, 부동산 중개인 등 주택 공급자는 실제 또는 인지되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거나, 임대료를 더 높게 청구하거나, 다른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, 특정 주택 제공 기회를 제시하거나 또는 제시하지 않거나 나, 수리 작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4 LAD법은 주택을 사고 팔 때 국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.** 예를 들어, 부동산 중개인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특정 매물을 보여주기를 거부하거나 특정 지역의 주택 구매를 권유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. 감정인은 귀하의 주택 가치를 평가 절하할 수 없으며, 대출 기관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.
- 5 주택 제공자는 차별적인 중립적인 정책이나 규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**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국적의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중립적 주택 공급 정책 및 규칙은 금지됩니다. 예를 들어, 주로 영어를 사용하거나 억양이 없는 지원자에게만 아파트를 제공하는 임대 관행은 LAD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.

LAD법 위반 신고, 차별 불만 제기 또는 LAD법에 따른 기타 권리 행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귀하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NJCivilRights.gov를 방문하거나 1-833-NJDCR4U (1-833-653-2748)로 전화하세요. DCR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뉴저지의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LAD법을 시행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[여기](#)를 클릭하세요.

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NJCivilRights.gov 를 방문하거나 [1.833.NJDCR4U](tel:1833NJDCR4U)로 전화하세요.



뉴저지 법무부 장관실
NJCivilRights.gov

